

온라인 해외직구 구매대행 사업 계약서

20 년 월 일

(주) 케이에프 그룹 : 대표 한 세 진 (인)

데이터포유 : 대표 엄 청 식 (인)

쇼핑몰 운영자 : 대표 (인)

계 약 서

주식회사 케이에프그룹 (이하 “갑”이라 한다)과 데이터포유 (이하 “을”이라 한다) 그리고 _____ (이하 “병”이라 한다)는 온라인 해외 직구 구매대행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상호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주요사업 내용)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온라인 해외직구 구매대행사업을 한다.

제2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 “을”, “병” 간의 사업제휴를 체결함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요업무)

- ① “갑”은 “병”의 쇼핑몰에 해외직구 구매대행 관련 상품을 등록한다.
- ② “을”은 “병”의 쇼핑몰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한 주문·정산 및 고객 관리 (CS) 업무를 “병”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한다.
- ③ “을”은 “병”이 요청하는 경우 “병”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사업자 등록증 발급 신청, 통신판매업 신고, 오픈마켓 입점 및 기본 설정 업무를 “병”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한다.
- ④ “병”은 “병”의 명의로 국내 오픈마켓에 쇼핑몰을 개설하고 구매대행을 위한 상품을 매입 및 수수료를 정산 배분한다.

제4조 (초기 비용)

- ① “병”은 “갑”에게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위한 비상주 사무실 임대차 계약 비용으로 계약서 1건당 일금 일십이만오천원정(W125,000)을 “갑”과 “병”이 상호 합의한 사업자등록증 개수만큼 본 계약 체결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갑”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 ② “병”은 “갑”에게 상품 유지 및 관리 서버 비용으로 연 1회에 한하여 본 계약 체결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일금 이십오만원정(W250,000)을 “갑”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 ③ “병”은 “을”에게 임대차 계약, 사업자등록증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 오픈마켓 가입 및 설정을 위탁 요청하는 경우, 본 계약 체결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일금 일백오십만원정(W1,500,000)을 “을”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 ④ “병”은 “갑”과 상호 협의된 사업자등록증 개수만큼의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을”에게 설정을 위탁한 경우 “을”과 납부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여 “을”이 “병”의 등록면허세를 대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

- ① “병”은 “갑”에게 당월 매출 이익금 중 40%를 상품 등록 및 상품 관리 수수료로 지급한다.
- ② “병”은 초기 위탁 임대차 계약, 사업자등록증 발급, 오픈마켓 가입 및 설정 위탁을 요청하는 경우, 본 계약 체결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일금 일백오십만원정(W1,500,000)을 “을”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 ③ “병”은 “을”에게 당월 매출 이익금 중 20%를 위탁 관리 수수료로 지급한다.
- ④ “병”은 상시 수수료를 “갑”과 “을”이 지정한 계좌로 익월 10일까지 각각 지급한다.

제6조 (반품 재고 로스부담)

- ① 반품 및 재고로 인한 손실 비용은 “갑” 과 “을” 이 지정한 날에 일괄 정산하여 처리한다.
- ② 반품 및 재고 손실 비용은 “갑” 이 40%, “을” 이 20%, “병” 이 40%를 각각 부담한다.
- ③ 반품 재고에 대한 소유권은 “병” 이 희망할 시 “병” 이 가지며, 보관 및 처분의 책임 또한 “병” 이 부담한다.

제7조 (판매 상품 지정)

- ① 판매 상품의 종류·수량·가격은 “갑” 이 결정한다. 단, “을” 과 “병” 은 매출 증진을 목적으로 판매 상품의 종류, 수량, 가격에 대한 의견을 “갑” 에게 제시할 수 있으며, “갑” 은 판매 경험을 통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를 검토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이행)

- ① “갑” 은 “병” 이 제4조(초기 비용) 및 제5조(수수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신규 상품 등록을 중지하고 기존 등록된 상품을 삭제할 수 있으며, “을” 은 주문·정산 및 고객관리에 대한 위탁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 ② “병” 은 “을” 의 운영 및 관리 대행 부실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출 증빙 및 영업 실적 보고에 대하여 “을” 에게 질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ㄱ. “을” 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매출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ㄴ. “을” 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5회 이상 판매 중지(퇴점) 조치를 당한 경우
 - ㄷ. “을” 이 매출 및 영업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이 불투명하거나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위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2개월 내에 개선되지 않는 경우, “병” 은 “갑” 에게 “을” 의 위탁 운영 대행 업무를 해지하고 타 위탁사로의 업무 이전을 요구하거나 직접 운영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 은 “병” 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직접 대행하거나, “병” 이 직접 운영하도록 조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제3의 수탁 운영 업체에게 “을” 의 업무를 이전할 수 있다.

제9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__년 __월 __일부터 20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병” 이 “갑” 과 “을” 에게, 혹은 “갑” 과 “을” 이 “병” 에게 서면으로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하거나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은 계약 만료 익일부터 1년씩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제10조 (계약의 양도)

“병” 은 “갑” 또는 “을” 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 (면책 사유)

“갑” 과 “을” 은 제1조의 주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병” 이 입점해 있는 국내 오픈마켓의 정책 변경 또는 국가 정책 또는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사업 규모의 축소 및 손실에 대하여 “병” 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지식재산권의 책임)

“갑”은 “병”의 쇼핑몰 내에 등록된 상품에 대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단, “을”과 “병”은 관련 문제가 발생할 시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 소홀이나 “갑”에게의 업무 연락 지연,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3조 (개인정보 관련 사항)

“을”은 “병”으로 부터 위탁 받은 대행업무 및 “병”의 개인정보 보호관련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병”은 이러한 사항 발생시 지체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에 대한 소홀이나 “을”에게 업무 연락 지연, 누락으로 인한 피해는 “을”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① “병”(이하 “귀책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 또는 “을”(이하 “해지권자”)은 “귀책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서면 통지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환불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다.

- ㄱ. “귀책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해지권자”가 2회 이상 시정을 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 ㄴ. “귀책당사자”에게 발행된 수표, 어음 등의 지급거절 또는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파산, 회생, 화의, 워크아웃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 ㄷ. “해지권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귀책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② “갑”(이하 “귀책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병”(이하 “해지권자”)은 “귀책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서면 통지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환불은 제15조 제2항에 따른다.

- ㄱ. “귀책당사자”에게 발행된 수표, 어음 등의 지급거절 또는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파산, 회생, 화의, 워크아웃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③ 본 계약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하여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된다.

제15조 (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 규정)

- 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병”이 계약 기간 내 본인의 단순 변심 등 “병”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병”이 제4조에 의거하여 “갑” 또는 “을”에게 기납부한 초기 비용 전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②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갑”이 계약 기간 내 본인의 사유로 인하여 “병”과의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갑”은 “병”이 기납부한 초기 비용에 대하여 계약 기간 1년(365일)을 기준으로 해지 효력 발생일을 제외한 잔여 일수만큼을 일할 계산하여 “병”에게 환불한다.
- ③ “갑”은 “병”이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이에 대하여 변상하거나 환불하지 아니한다. 즉, 본 계약은 원금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 ④ 제14조 제4항에 따라 상호 서면 동의 하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기납부한 초기 비용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자료제공 및 기밀 유지)

- ① “갑”, “을”, “병”은 본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영업비밀, 기술정보, 자료(이하 “비밀등”이라 한다)를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모든 “비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갑”, “을”, “병”은 본 계약기간은 물론 종료 후에도 상대방이 제공한 “비밀등”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외부유출로 야기되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유출한 측이 진다.
- ③ “갑”, “을”, “병”은 그 임직원, 관련자로 하여금 위 각항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신의성실의 의무)

“갑”, “을”, “병”은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상호관련 업무에 협력한다.

제18조 (손해 배상)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정부규제 또는 사회통념상 이에 준하는 당사자 일방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노사분규 제외)로 인하여 그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제20조 (소송의 합의 관할)

본 계약이행에 있어 “갑”, “을”, “병”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하여 일체의 분쟁을 해결한다.

제21조 (효력 및 해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발효하고, 계약서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준한다.

제22조 (계약서의 보완)

본 계약서의 세부적인 이행사항에 관하여 내용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갑”, “을”, “병”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삼(3)부 작성, 날인 후 “갑”, “을”, “병”이 각 각 일(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식회사 케이에프그룹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영천로 131,
대표이사 : 한 세 진 (인)

코너원 스마트타워 530호

“을”

데이터포유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영천로 131,
대표 : 엄 청 식 (인)

코너원 스마트타워 530호

“병”

당사자

주소

대표자

(인)